

# 2019년도 제20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## I. 회의 개요

- 일 자 : 2019. 10. 2.(수요일)
- 방 법 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
  - 심의위원 : 전용준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성호 위원, 임진모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## 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6건(안건번호 제 2019-124505호~124604호)
 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

### 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금번 불법 복제 전송과 관련하여 심의대상이 된 안건들은 2018년 2019년 일반에게 공개된 국내외 영상저작물에 관한 것들입니다. 예컨대 영화 엑시트(2018), 영화 기생충(2019), 영화 안나(2018), 영화 엑스맨: 다크 피닉스(2019) 등의 사안들로서,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- B 위원 : 본건 심의대상물은 영화 등 영상저작물에 대한 복제물로서,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외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도 해당하는 바 없으며,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보이므로, 시정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
- C 위원 : 124505호에서 124604호까지 100건의 경우 최신영화에 대한 무단 복제전송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.

2019년 제206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 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10. 2.

분과위원장 전용준

위원 박성호

위원 임진모